

# 제21대 국회의원선거(2020. 4. 15.) 근로자 선거권 행사 보장 안내

근로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투표시간은 반드시  
사업주가 보장해야 합니다.

☑ **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시간\*을  
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(근로기준법 제10조).**

\*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 
부수적 시간, 사전준비 시간, 사후정리 시간 등을 포함 (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간은 유급임)

» 한편,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'20.1.1.부터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 
따른 공휴일인 선거일('20.4.15.)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 
(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).

☑ **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에도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 
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**



## 선거권 행사 관련 법령



### 근로기준법

제10조(공민권 행사의 보장)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, 그 밖의 공민권(公民權)  
행사 또는 공(公)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.  
다만, 그 권리 행사나 공(公)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
\*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

### 공직선거법

제6조(선거권행사의 보장) ①·②생략  
③ 공무원·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 
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,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.  
제6조의2(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)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 
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.  
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 
보장하여 주어야 한다. \*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
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 
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,  
사보,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.



고용노동부

